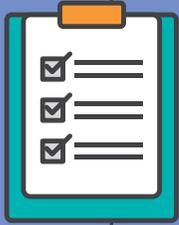


수출기업을 위한  
FTA 특혜관세 적용관련



해외통관애로

SELF

대응 가이드



## 일러두기



국가마다 관세행정 제도에 차이가 존재하여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관세당국은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 등에 의문이 있는 경우, FTA 특혜관세 적용을 거부하거나 통관을 보류하고, 원산지 증명서 보완을 요구하거나 한국 세관의 공식 의견을 요청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해외통관애로와 관련한 국내 문의처 및 해결 방법을 찾는 데 시간이 소요되어 대응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에 원산지증명서 관련 통관애로의 발생 예방 및 초기 대응을 위한 참고 자료로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들을 모아 우리 기업이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오니 문제 해결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신속하게 한국 관세청과 세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오니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 CONTENTS

## 목차



## I. 해외통관애로

4

- 해외통관애로란?
- FTA 원산지증명서 관련 해외통관애로 발생 현황

FTA 원산지증명서 관련 해외통관애로 발생 시

## II. SELF 대응 가이드

5

### Chapter 1 발생 예방

### Chapter 2 발생 후 초기 자체 대응

#### STEP 1 진위여부 조회 웹사이트 안내

#### STEP 2 상황 설명문 전달

##### CASE 1 서명권자 등 확인불가

##### CASE 2 정정 후 발급번호 변경

##### CASE 3 소급발급 문구 기재 요구

##### CASE 4 진정등본 문구 삭제 요구

##### CASE 5 EODES 관련 오류

## III. 해외통관지원센터

18

- 해외통관애로 신고
- 해외통관지원센터 소개

# I

## 해외통관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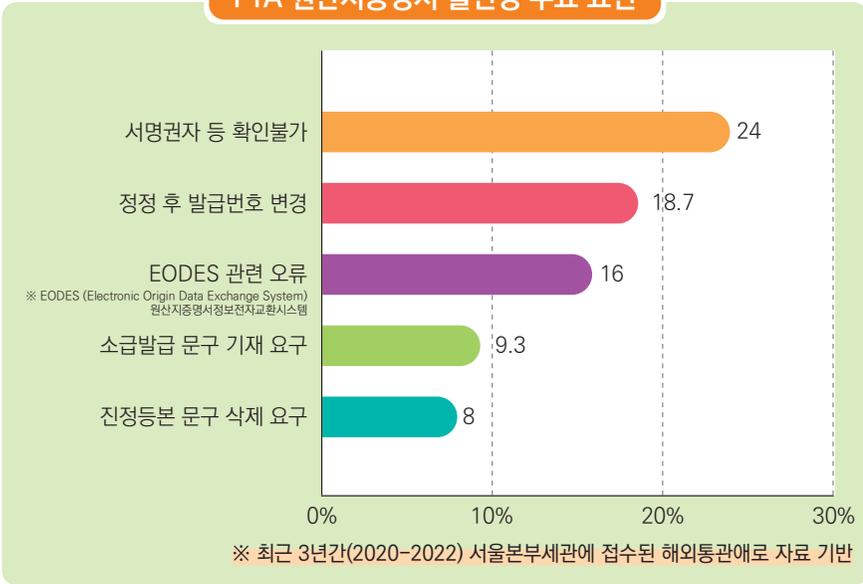
### 해외통관애로란?

기업이 물품을 수출입하면서 해외에서 겪는 관세, 원산지, 품목분류, 수출입요건, 통관절차 등의 관세·비관세 장벽과 관련된 애로사항

### FTA 원산지증명서 관련 해외통관애로 발생 현황

본 가이드에서는 해외통관애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FTA 원산지증명서 관련 사항을 다룸

#### FTA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주요 요인



# II

## FTA 원산지증명서 관련 해외통관애로 발생 시 SELF 대응 가이드

### Chapter 1 발생 예방

#### 수출 상대국 최신 정보 확인

- 최신 해외동향, 주요국 관세법령, 통관제도 및 유의사항, 통관애로사례, 외국관세율 조회, 여행자 통관 안내, 현지 관세관 연락처 등 유용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

<https://www.customs.go.kr/foreign/main.do>

해외통관지원센터 >> 해외통관정보



#### FTA 혜택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와 관련하여 협정문에 명시된 사항에 대한 정확한 숙지가 중요

- 원산지증명서 인정 여부는 협정문을 기반으로 한 상대국의 재량이므로 규정대로 작성하여 불인정 발생을 최소화
- 수출자는 적용을 원하는 FTA에 해당하는 원산지증명서(신고서) 서식을 이용하고, 작성방법에 유의하여 발급기관에 신청하거나 직접 작성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FTA포털 >> FTA 활용제도 >> 원산지증명서 발급 >> 원산지증명서 서식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의 수출물품의 HS번호가 다를 경우, 수입국의 HS번호를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 Tip

네, 가능합니다.

협정상대국의 HS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제출하면 수입국의 HS번호를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협정상대국의 HS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

- 가) 수입신고필증
- 나) 품목번호 확인서
- 다) 사전심사결정서(advance ruling)
- 라) 협정상대국 관세-품목분류표에 명확하게 규정된 품목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정보
- 마) 기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출처: 품목분류번호 해석상이 등에 따른 FTA 업무처리 지침



## Chapter 2 발생 후 초기 자체 대응

### STEP 1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 확인 가능한 웹사이트 안내

<https://www.customs.go.kr/kcs/co/co.do>



- 상대국 관세당국에서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에 의문을 가질 시 우리나라 관세청 웹사이트 안내

### STEP 2 사례별 예시문 활용하여 상황 설명문 전달

#### 해외통관애로 주요 사례

- |      |               |      |               |
|------|---------------|------|---------------|
| 사례 1 | 서명권자 등 확인불가   | 사례 2 | 정정 후 발급번호 변경  |
| 사례 3 | 소급발급 문구 기재 요구 | 사례 4 | 진정등본 문구 삭제 요구 |
| 사례 5 | EODES 관련 오류   |      |               |

-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 확인 요청을 받은 후, 수입자 등을 통해 상대국 세관 담당자에게 사례별 예시문을 활용하여 상황 설명문을 전달
- 수출자는 애로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수입자 등에게 원산지증명서와 함께 상황 설명문을 미리 전달하여 애로 발생 예방

## 사례 1 서명권자 등 확인불가



### 발생 상황

A사는 서울세관에서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베트남 수입자 측에 전달하였다. 그런데 베트남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 12번란 서울세관 담당자 홍길동의 서명 및 인장 확인이 불가하다며 원산지증명서를 불인정하였다.

### 대응 전략

1. 해외통관지원센터에 연락하여 한국 관세청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담당자 변경사항을 상대국 세관에 통보했는지 확인
2. 통보 누락 시, 한국 관세청에 변경 사항 전달을 요청
3. 통보 확인이 되면, 대응 예시문 활용하여 베트남 관세당국에서 각 지역 세관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담당 변경 사항을 통보했는지 확인 요청

### 대응 예시문

#### 관련 법령

한-아세안 FTA 부속서 3(원산지 규정)의 부록 1(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2조(발급기관) 제1항

1. 각 당사국은 발급기관의 명칭, 주소, 견본 서명 및 견본 관인을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사무국을 통하여 다른 모든 당사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동 목록의 변경사항은 즉시 동일한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상기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담당자가 변경될 시, 일반적으로 즉시 그 서명과 관인을 아세안 사무국에 통지하고 있으므로 베트남 시스템 상 누락된 것은 아닌지 먼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가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법령 참고

- 한-아세안 FTA 부속서 3(원산지 규정)의 부록 1(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2조(발급기관) 제1항
- 한-인도 CEPA 제4.2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제2항
- 한-중국 제3.16조 (권한 있는 기관) 제1.2항
- 한-베트남 제3.15조 (발급 당국) 제1.2.3항
- 한-인도네시아 제3.17조 (발급 기관) 제1.2항

## Case 1 Unconfirmed Signatory



### Example Text / Vietnam

#### Related Statute

Paragraph 1 of Rule 2 (Issuing Authorities) of Appendix 1 (Operational Certification Procedures for the Rules of Origin) to Annex 3 (Rule of Origin) under Korea-ASEAN FTA

1. Each Party shall provide the names, addresses, specimen signatures and specimen of official seals of its issuing authorities to all the other Parties, through the ASEAN Secretariat. Any change in the said list shall be promptly provided in the same manner.

When there is any change with the information of the Certificate of Origin issuing authority, KCS (Korea Customs Service) notifies the latest signature and the official seal of the authority promptly to the ASEAN Secretariat based on the Rule above. Therefore, you may check whether the update is reflected in the system of Vietnam first.

I hope that this information is administratively helpful for you.

### References

- Paragraph 1 of Rule 2 (Issuing Authorities) of Appendix 1 (Operational Certification Procedures for the Rules of Origin) to Annex 3 (Rule of Origin) under Korea-ASEAN FTA
- Paragraph 2 of Article 4.2 (Issuing authorities of Certificate of Origin) under Korea-India CEPA
- Paragraph 1.2 of Article 3.16 (Authorized Body) under Korea-China FTA
- Paragraph 1.2,3 of Article 3.15 (Issuing Authority) under Korea-Vietnam FTA
- Paragraph 1.2 of Article 3.17 (Issuing Body) under Korea-Indonesia FTA

## 사례 2 정정 후 발급번호 변경



### 발생 상황

B사는 수출신고서 정정으로 인해 기존에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정정발급 신청하였고 정정발급본을 수입자 측에 전달하였다. 그런데 인도 세관에서 정정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와 발급코드가 기존의 원산지증명서와 상이함을 이유로 이를 원본으로 인정하지 않고 특혜세율 적용을 거부하였다.

### 대응 전략

1. 우리나라 국내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으면 원산지증명서의 정정발급 신청이 가능
2. 원산지증명서가 정정 발급되면 발급일자는 이전과 동일하지만 발급번호 및 발급코드는 변경되고, 동시에 정정 전 원본은 유효하지 않음을 유의
3. 대응 예시문을 활용하여 상황 안내

### 대응 예시문

#### 관련 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9항, 제10항  
원산지증명서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어 원산지증명서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를 정정발급 할 수 있다. 정정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원산지증명서발급신청서에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당초 발급을 신청한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상기 규정(국내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으면 원산지증명서는 정정발급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스템 상,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수정되면 증명서 발급번호와 코드는 바뀌게 되지만, 발급일자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이전 증명서 발급번호는 유효하지 않게 되며, 수정된 증명서에는 새로운 발급번호가 부여됩니다.

## Case 2 Reference Number Issue



### Example Text / India

#### Related Statute

Paragraph 9, 10 of Article 10 of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If an error is made in the matters entered in the Certificate of Origin, a corrected Certificate of Origin may be issued. A person who intends to correct the Certificate of Origin shall submit an application for the issuance of a Certificate of Origin attaching the original copy of the certificate to the relevant issuing authority.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of Korean law above, a Certificate of Origin may be rectified and re-issued if there is an error in the content of the Certificate of Origin.

Under the Certificate of Origin issuance system of KCS, when the content of the Certificate of Origin is corrected, the reference number and code are changed, but the date of issuance remains unchanged.

Therefore, the reference number of previous Certificate of Origin becomes invalid, and a new reference number will be assigned to the revised certificate.

### 사례 3 소급발급 문구 기재



#### 발생 상황

C사는 2023년 2월 27일 선적하여 3월 2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았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3월 2일은 4근무일이므로 기재되었어야 할 소급발급 문구('ISSUED RETROACTIVELY')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산지증명서를 불인정하였다.

#### 대응 전략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기에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토요일, 일요일이 포함되는지 확인
2. 해당일자는 근무일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대응 예시문을 활용하여 상황 안내

#### 대응 예시문

##### 관련 법령

한-아세안 FTA 부속서 3(원산지 규정)의 부록 1(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7조 제1항, 4항

1. 원산지증명서는 부속서 3의 의미 내에서 수출상품이 수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원산지로 인정될 수 있는 때에는 언제나, 모든 요구 서류의 제출을 조건으로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 직후(신고 선적일부 3근무일 이내)에 발급된다.
4. 뜻하지 아니한 실수, 누락 또는 그 밖의 타당한 원인으로 인하여 원산지증명서가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 직후 곧 발급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 “소급 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선적일부 1년 이내에 소급발급 할 수 있다.

3월 1일(개천절)은 대한민국의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함께 첨부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신고 선적일부 3근무일' 계산 시, 이 날짜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해당 원산지증명서는 3근무일 이내에 발급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입니다.

#### 법령 참고

- 한-아세안 FTA 부속서 3(원산지 규정)의 부록 1(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7조
- 한-인도 CEPA 제4.4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제4항
- 한-중국 제3.15조 (원산지증명서) 제4항
- 한-베트남 제3.14조 (원산지증명서) 제4항
- 한-인도네시아 제3.16조 (원산지증명서) 제5항

### Case 3 The word “ISSUED RETROACTIVELY”



#### Example Text / Indonesia

##### Related Statute

Paragraph 1, 4 of Rule 7 of Appendix 1 (Operational Certification Procedures for the Rules of Origin) to Annex 3 (Rule of Origin) under Korea-ASEAN FTA

1. Subject to the submission of all documentary requirements, a Certificate of Origin shall be issued prior to or at the time of shipment or soon thereafter but should not be more than three (3) working days from the declared shipment date whenever the good to be exported can be considered to be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y within the meaning of Annex 3
4. In exceptional cases where a Certificate of Origin has not been issued prior to or at the time of shipment or soon thereafter due to involuntary errors, omissions or other valid causes, a Certificate of Origin may be issued retroactively but no later than one year from the date of shipment, bearing the words “ISSUED RETROACTIVELY”

March 1 (Independence Movement day) is the national holiday in Korea.

The ‘Regulations on Public Holidays of Government Offices’, Korean law, is enclosed for your reference.

Therefore, March 1 should not be counted when calculating three (3) working days from the declared shipment date in accordance with Rule above.

I confirm that this Certificate of Origin is valid and was duly issued within three (3) working days.

#### References

- Paragraph 1,4 of Rule 7 of Appendix 1 (Operational Certification Procedures for the Rules of Origin) to Annex 3 (Rule of Origin) under Korea-ASEAN FTA
- Paragraph 4 of Article 4.4 (Issuance of a Certificate of Origin) under Korea-India CEPA
- Paragraph 4 of Article 3.15 (Certificate of Origin) under Korea-China FTA
- Paragraph 4 of Article 3.14 (Certificate of Origin) under Korea-Vietnam FTA
- Paragraph 5 of Article 3.16 (Certificate of Origin) under Korea-Indonesia FTA

[KOR]

[ENG]



[참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사례 4 진정등본 문구 삭제 요구



### 발생 상황

D사는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 출력을 시도했지만 프린터 오류로 인쇄되지 않아 재발급을 신청하였다. 재발급 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자 측에 전달하였는데, 베트남 세관에서 진정등본 문구('CERTIFIED TRUE COPY')가 기재되어있다는 이유로 이를 원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 대응 전략

1. 분실 · 도난 · 훼손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
2. 이 때,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스템 상 자동적으로 진정등본이라는 보증 문구가 기재되고 이는 필수적인 사항임을 대응 예시문을 활용하여 안내

### 대응 예시문

#### 관련 법령

한-아세안 FTA 부속서 3(원산지 규정)의 부록 1(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8조

8. 원산지증명서가 도난, 분실 또는 멸실된 경우, 생산자 그리고/또는 수출자는 원산지 증명서 상의 12번의 란에 "진정 등본"이라는 보증문구가 기재된 원본의 진정등본을 발급기관이 보관중인 수출서류를 근거로 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등본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발급일자가 기재되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의 진정등본은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발급일로부터 1년 내에 발급하여야 한다.

진정등본이 발급될 때, 진정등본 문구는 상기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6번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 법령 참고

- 한-아세안 FTA 부속서 3(원산지 규정)의 부록 1(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제8조
- 한-인도 CEPA 제4.4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제5항
- 한-중국 제3.15조 (원산지증명서) 제5항
- 한-베트남 제3.14조 (원산지증명서) 제6항
- 한-인도네시아 제3.16조 (원산지증명서) 제7항

## Case 4 The word "CERTIFIED TRUE COPY"



### Example Text / Vietnam

#### Related Statute

**Rule 8 of Appendix 1 (Operational Certification Procedures for the Rules of Origin) to Annex 3 (Rule of Origin) under Korea-ASEAN FTA**  
In the event of theft, loss or destruction of a Certificate of Origin, the producer and/or exporter may apply to the issuing authority for a certified true copy of the original to be made out on the basis of the export documents in its possession bearing the endorsement of the words "CERTIFIED TRUE COPY" in box 12 of a Certificate of Origin. This copy shall bear the date of issuance of the original Certificate of Origin. The certified true copy of a Certificate of Origin shall be issued no later than one year from the date of issuance of the original Certificate of Origin.

When a certified true copy of the original Certificate of Origin is issued, Box 6 (Remarks) should bear the word "CERTIFIED TRUE COPY" pursuant to the Rule above.

### References

- Rule 8 of Appendix 1 (Operational Certification Procedures for the Rules of Origin) to Annex 3 (Rule of Origin) under Korea-ASEAN FTA
- Paragraph 5 of Article 4.4 (Issuance of a Certificate of Origin) under Korea-India CEPA
- Paragraph 5 of Article 3.15 (Certificate of Origin) under Korea-China FTA
- Paragraph 6 of Article 3.14 (Certificate of Origin) under Korea-Vietnam FTA
- Paragraph 7 of Article 3.16 (Certificate of Origin) under Korea-Indonesia FTA

## 사례 5 EODES 관련 오류

### EODES(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란?

원산지증명서정보전자교환시스템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필수적인 원산지정보를 협정 상대국과 전자적 방식으로 교환하는 시스템

\*2023.6 기준, 중국, 인도네시아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에 한해서 활용 가능

### 발생 상황

E사는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수입자 측에서 e-CO 조화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 대응 전략

1. FTA포털에서 CO-PASS → CO-PASS 진행정보 클릭 후 협정/국가, 발급번호(Certificate No.), 참조코드(Reference Code) 입력하여 전송결과 및 응답결과 확인
2. 전송실패 및 미응답 시, 해외통관지원센터 담당자에 재전송 요청 후 전송 성공 화면과 함께 대응 예시문을 활용하여 상황 안내
3. 전산시스템 개선 요청 및 기타 오류 발생 시, 해외통관지원센터에 문의

### 대응 예시문

대한민국 관세청에 확인해본 결과, 해당 e-CO는 성공적으로 인도네시아 세관 시스템으로 전송되었습니다. 해당 건 수입 통관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 Example Text / Indonesia

As a result of confirmation with KCS, it was confirmed that the concerned e-CO was successfully transmitted from the KCS system to the Indonesia Customs system. Kindly proceed with the import customs clearance for the concerned case.

## FTA원산지증명서 관련 해외통관애로 발생 시 SELF 대응 가이드

### STEP 1 FTA포털 » CO-PASS진행정보 접속하여 E-CO 전송 여부 직접 확인 가능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ad/ftaEodes/COinfo.do?mi=3537>



### STEP 2 전송 실패 및 미응답 확인

- 원산지증명서 발급 담당자 또는 해외통관지원센터에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 전달 후 재전송 요청

✓ 조회목록 <small>송신수신일자를 선택하세요</small>									
전송구분	발급번호	전송일자	메세지유형	전송결과	응답결과	응답시간	실패사유	통관여부	통관일자
한→중			NEW OR UP DATE	성공	미응답			통관	

✓ 조회목록 <small>송신수신일자를 선택하세요</small>									
전송구분	발급번호	전송일자	메세지유형	전송결과	응답결과	응답시간	실패사유	통관여부	통관일자
한→인니			Certificate Of Origin(Original)	실패				진행중	

## 해외통관애로 신고

- 자체 대응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하거나 한국 세관의 공식 의견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때, 관세청 및 세관의 해외통관지원센터에 메일로 애로사항 신고

### 신고서 작성요령

해외통관애로 신고(접수)서

① 등록번호	② 접수일자	③ 접수일자	④ 접수일자
⑤ 접수자	⑥ 접수자	⑦ 접수자	⑧ 접수자
⑨ 업종명	⑩ 업종명	⑪ 업종명	⑫ 업종명
⑬ 사업자번호	⑭ 사업자번호	⑮ 사업자번호	⑯ 사업자번호
⑰ 기업구분	⑱ 기업구분	⑲ 기업구분	⑳ 기업구분
㉑ 애로유형	㉒ 애로유형	㉓ 애로유형	㉔ 애로유형
㉕ 국가	㉖ 국가	㉗ 국가	㉘ 국가
㉙ 원장	㉚ 원장	㉛ 원장	㉜ 원장
㉝ 수출신고번호	㉞ 수출신고번호	㉟ 수출신고번호	㊱ 수출신고번호
㊲ 용명	㊳ 용명	㊴ 용명	㊵ 용명
㊶ 재적	㊷ 재적	㊸ 재적	㊹ 재적
㊺ 애로사항 및 문제점	6차 원칙에 따라 작성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㊻ 개인요청사항			
㊼ 수출입금액			
㊽ 해역금액			
㊾ 해역금액			
㊿ 산출기준			
① 비고			

- ①, ②, ③, ④ 작성 불필요
- ⑫ 사실관계 파악 및 서한문 발송을 위해 수입국 세관담당자 메일 주소 확인 필수
- ⑬ 수출신고서 첨부
- ⑭ 원산지증명서 첨부
- ⑯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명확하게 작성

### ⚠️ 해외통관애로로 보기 어려운 경우

- 국내에서의 수출입통관 절차 등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문제
- 통관문제 발생 원인이 우리기업의 귀책인 경우
- 관세청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닌 경우
- 거래처 등 사인간의 분쟁

## 해외통관지원센터 소개



### \* HS국제분쟁신고센터 신청

HS품목분류에 대한 국제분쟁을 전문적으로 해소

관세평가분류원 >> 고객의 소리



<https://www.customs.go.kr/cvnci/main.do>

### \* 관세관 정보 및 연락처

현지에 있는 관세관에게 도움 요청

해외통관지원센터소개 >> 조직&직원 안내



<https://www.customs.go.kr/foreign/main.do>



수출기업을 위한  
FTA 특혜관세 적용관련  
해외통관애로  
**SELF** 대응 가이드

